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제2685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06.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0. 12.
다. 상정·의결일자 : 2023. 10. 18.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이유

전문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에 대하여(2021. 1. 28. 의안번호 제2263호)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제4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 시 예산액 대비 2024년 예산 편성 요구액이 20% 이상 증액되어 의회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 근거

-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4. 위탁 내용

가.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면적	종사자	정원	시설현황	비고
고성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고성읍 송학로47- 3, 2층	163m ²	2명	20명	놀이·학습공간, 사무공간, 상담실 등	

나. 위탁기간: 2021. 4. 1. ~ 2025. 12. 31.

다. 위탁방법 및 추진사항

- 1)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선정(공개모집): 2021. 3. 17.
- 2) 수탁자: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대표자 제옥자)
- 3) 위탁계약 체결: 2021. 3. 29.
- 4) 위탁운영: 2021. 4. 1. ~ 현재 (센터장 최행숙)

라. 위탁내용: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마. 예산 변경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당초 (2021년)	변경 (2024년)	증감액	비고
합계	68,640	99,072	30,432	44% 증가
인건비	53,040	73,272	20,232	국비50% 도비25% 군비25%
운영비	3,600	12,000	8,400	국비50% 도비25% 군비25%
자체운영비	12,000	13,800	1,800	군비100%

- 1) 민간위탁 동의 시 편성한 예산액 대비 2024년 예산 편성 요구액 **20% 이상 증액**
- 2) 증액 사유: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 가내시 통보 기준(국 50, 도 25, 군25)
 - 가) 인건비: 증 20,232천 원
 - 당초(2021년): 4,420천 원 × 12월 = 53,040천 원(센터장의 1명)
 - 변경(2024년): 6,106천 원 × 12월 = 73,272천 원(센터장의 1명)
 - 나) 운영비: 증 8,400천 원
 - 당초(2021년): 월 300천 원 × 12월 = 3,600천 원
 - 변경(2024년): 월 1,000천 원 × 12월 = 12,000천 원
 - 다) 자체운영비: 증 1,800천 원
 - 당초(2021년): 월 1,000천 원 × 12월 = 12,000천 원
 - 변경(2024년): 월 1,150천 원 × 12월 = 13,800천 원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한 다함께돌봄 2호점 운영사무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내용 변경에 대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으려는 것임.

- 중요내용 변경사항: 예산의 20퍼센트 이상 변경
 - (당초 동의안)
 - 소요예산(2021년): 68,640천 원
 - (금회 변경 동의안)
 - 소요예산(2024년): 99,072천 원
 - 증액사유: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 가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 당초 동의안 제출 시 종전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소요 예산만을 제출 하였으나 2024년도 국도비 가내시에 의한 예산 편성 시 중요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의 20% 이상 변경에 해당하여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다함께돌봄센터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23. 10. 18. 원안가결